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8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영철,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서준오, 이용균,
이원형, 이종환, 임종국,
홍국표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최근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살인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됨
- 특히, 공동주택 자가 거주 외에 임차인 등도 동일한 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 상위법상 임차인 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근거 조항 마련
- 이 외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층간소음 모범 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후단에 신설 (안 제2조제2항)
- 나. 해당 조항의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조항 개정 (안 제16조)
-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8조)
- 라.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16조 중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8조) 중 “단체”를 “단체(제18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 ----- ----- ----- -----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예방교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지정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방교육) -----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
<신설>	제18조(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시장은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

	<u>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 인증서를 발급한다.</u>
<u>제18조(표창)</u> 시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u>단체</u>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u>제19조(표창)</u> ----- ----- ----- ----- <u>단체(제18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u>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 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2조(정의)	×	“입주자등”에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제16조(예방교육)	×	상위법 개정(「환경교육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3	제18조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제1항	모범관리 단지 선정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선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붙임 참조)
		제2항	모범관리 인증서 ¹⁾ 발급시 비용이 발생하지만,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제19조(표창)	△	표창 ²⁾ 수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만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대상 인원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움 다만 표창 단가를 참고자료로 제시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18조제2항 모범관리인증서 발급 및 표창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대상 및 수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움(인증서 및 표창 관련 비용은 참고자료 제시)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1) (참고자료) 모범단지 인증서 관련 소요비용 ※ 2024년도 서울시 예산서 참조

- 사 업 명 : 「서울 우수 한옥 인증」

- 산 출 식 = 제작단가 × 수량

= 인증현판 (350천원/개당), 인증기념패 (165천원/개당), 인증서 8천원/개당)

2) (참고자료) 표창수여 관련 소요비용 ※ 2024년도 서울시 예산서 참조

- 사 업 명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산 출 식 = 제작단가(5,500원) × 수량

(붙임1)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 (2024년도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2578호, 2024.2.8. 자료 참고)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로서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주체 공동 명의로 신청하되 2023년 S-APT 이용실적이 있고,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는 단지

※ 결격사유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계기관으로 행정처분 받은 단지
- '21년 이후 승강기 등 안전 관련 정기검사 '불합격 처분'후 시정조치 미이행 단지
- '21년 이후 관리노동자 안전사고(사망사고) 및 투신사고 발생 단지

- 지원기준 : 1개 단지당 최대 30백만원 한도, 단, 자부담 10% 이상

※ 사업예시

-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지원방법 : 자치구를 통해 선정된 모범단지에 보조금 교부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 2022년도 :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31개 단지
- 2023년도 :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23개 단지 선정
- 2024년도 :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100개 단지 선정